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교통정책과)

제출일: 2022. 7.

1. 제안이유

○ 주말 및 공휴일 운행하지 않는 유휴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 가족여행 등의 여가활동 이동에 지원하여 위탁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유휴 특별교통수단 제공 및 이용 조항 신설(안 제13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』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 공휴일 등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유휴 특별교통수단의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.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